

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



2023. 4.

본 『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』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 사항은 교육부 지침 및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, 각 전형별 일정, 전형별 세부사항 등은 반드시 추후 발표되는 『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(수시모집 및 정시모집)』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I

모집시기 및 전형별 모집인원

1.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

모집단위	입학정원		
	주간	야간	합계
초등교육과	598명	0	598명

2. 모집시기 및 전형별 모집인원

모집시기	전형명		정원 구분	모집인원
수시모집	일반전형	학생부종합(교직적성전형)	정원 내	245명
	지역균형 특별전형	학생부교과(학교장추천전형)		140명
	기회균형 특별전형	학생부종합(국가보훈대상자전형)		5명
		학생부종합(저소득층학생전형)	20명	
		학생부종합(농어촌학생전형)	정원 외	23명
		학생부종합(장애인학생전형)		20명
	학생부종합(서해5도학생전형)	3명		
소 계				456명
정시모집 「나」군	일반전형	수능(일반학생전형)	정원 내	192명 ¹⁾
	기회균형 특별전형	수능(저소득층학생전형)	정원 외	9명
	특별전형	기타(탈북학생전형)		3명
	소 계			
합 계				660명

1) 2023학년도 정시모집 등록포기자 4명 이월 인원 포함

※ 수시모집 정원 내 전형【학생부종합(교직적성전형, 국가보훈대상자전형, 저소득층학생전형), 학생부교과(학교장 추천전형)】의 최종 등록자 수가 모집인원에 미달될 때에는 정시모집 정원 내 수능(일반학생전형)으로 이월 선발함

※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성비 적용 선발하지 않음

1. 전형별 지원 자격

전형 구분		지원 자격
	학생부종합 (교직적성전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지역균형 특별전형	학생부교과 (학교장추천전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내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 교직 잠재능력과 인성 및 적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(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자, 2021년 2월 이후 졸업자) ※ 추천인원 제한 없음
기회균형 특별전형	학생부종합 (국가보훈대상자전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,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 제2호에 따른 '국가보훈대상자'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
	학생부종합 (저소득층학생전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,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2호에 따른 수급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(차상위 본인부담경감, 차상위 자활급여, 차상위 장애수당,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)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
	학생부종합 (농어촌학생전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, 아래의 '가'또는 '나'에 해당하는 자(중·고교 조기졸업자 불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농어촌 재학(중학교 3년 + 고등학교 3년) + 농어촌 거주 6년(지원자, 부, 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(읍, 면 지역) 또는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는 중·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,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읍·면(농어촌) 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나. 농어촌 재학(초등학교 6년 + 중학교 3년 + 고등학교 3년) + 농어촌 거주 12년(지원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(읍, 면 지역) 또는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는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읍·면(농어촌) 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
	학생부종합 (장애인학생전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,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의해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상이등급자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상이등급자
	학생부종합 (서해5도학생전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,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해5도에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5도에 설립된 중·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- 서해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5도에 설립된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
2. 수시모집 평가 방법

❖ 선발방법 및 전형요소 반영 비율 및 점수

전형	선발 방법	선발 비율	전형요소 반영 비율 및 점수			비고
			서류 평가	학생부 교과	면접 평가	
학생부교과 (학교장추천전형)	일괄 합산	100%	-	70% (700점)	30% (300점)	·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설정 (4개 영역 등급 합 12등급 이내) · 비대면 면접평가
학생부종합 (교직적성전형)	일괄 합산	100%	100% (1,000점)	-	-	·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없음
학생부종합 기회균형 특별전형	일괄 합산	100%	100% (1,000점)	-	-	· 전형자료에 답변 녹화 동영상 추가

※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반영 방법

-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) 4개 영역을 반영함
(탐구 영역은 응시 과목 중 상위 등급 1개 과목을 반영함)
- 한국사 영역 응시 필수
- 제2외국어, 한문은 반영하지 않음

※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교직인성 평가를 위한 답변 녹화 동영상을 전형자료로 활용함

❖ 학생부교과전형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

구분	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반영학기	졸업예정자의 경우 5학기, 졸업자의 경우 6학기 반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반영과목	반영학기 내 석차등급 및 성취도가 표기된 전 과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중치여부	학년별·교과유형별·과목별 가중치 없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점수산정방식 및 배점구간	*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교과목별 석차등급 또는 성취도를 대학 자체 교과성적 환산 점수로 변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 colspan="10">석차등급 및 성취도별 환산점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석차등급</td> <td>1</td><td>2</td><td>3</td><td>4</td><td>5</td><td>6</td><td>7</td><td>8</td><td>9</td>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성취도</td> <td>3단계 평가</td> <td>A</td><td>-</td><td>B</td><td>-</td><td>C</td><td>-</td><td>-</td><td>-</td><td>-</td> </tr> <tr> <td>5단계 평가</td> <td>A</td><td>-</td><td>B</td><td>-</td><td>C</td><td>-</td><td>D</td><td>-</td><td>E</td> </tr> <tr> <td>환산점수</td> <td>8</td><td>7</td><td>6</td><td>5</td><td>4</td><td>3</td><td>2</td><td>1</td><td>0</td>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석차등급 및 성취도별 환산점수										석차등급	1	2	3	4	5	6	7	8	9		성취도	3단계 평가	A	-	B	-	C	-	-	-	-	5단계 평가	A	-	B	-	C	-	D	-	E	환산점수	8	7	6	5	4	3	2	1	0	
	구분	석차등급 및 성취도별 환산점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석차등급	1	2	3	4	5	6	7	8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성취도	3단계 평가	A	-	B	-	C	-	-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단계 평가		A	-	B	-	C	-	D	-	E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환산점수	8	7	6	5	4	3	2	1	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· 교과성적 환산점수 = 600 + {석차등급 및 성취도 환산점수 평균(㉠)} × 50}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· 석차등급 및 성취도 환산점수 평균(㉠) = $\frac{\sum(\text{교과목별 석차등급 또는 성취도 환산점수} \times \text{교과목별 이수단위수})}{\sum(\text{교과목별 이수단위수})}$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Ⅲ

정시모집 전형별 주요사항

1. 전형별 지원 자격

구분		지원 자격
수능 (일반학생전형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,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리 대학이 반영하는 영역을 모두 응시한 자
기회균형 특별전형	수능 (저소득층학생전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,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리 대학이 반영하는 영역을 모두 응시하고,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2호에 따른 수급자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(차상위 본인부담경감, 차상위 자활급여, 차상위 장애수당,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)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
기타 (탈북학생전형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탈북학생

2. 정시모집(수능위주) 평가 방법

❖ 선발방법 및 전형요소 반영 비율 및 점수

모집시기	전형	선발방법	선발 비율	전형요소 반영 점수	수능최저학력기준
				수능성적	
정시모집 「나」군	수능(일반학생전형)	일괄합산	100%	100% (1,000점)	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
	수능(저소득층학생전형)			100% (1,000점)	없음

※ 수능(일반학생전형) 수능최저학력기준: 국어, 수학, 탐구(사회/과학) 영역의 평가와 별개로 영어 3등급, 한국사 4등급 이내, 수능(저소득층학생전형) 및 탈북학생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

❖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

반영 영역	활용 지표	반영 비율	반영 점수	반영 방법	비고
국어	백분위	25%	250점		반영 영역별 별도의 지정 선택과목 없음
수학	백분위	25%	250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수학 선택과목 중 '미적분' 또는 '기하' 선택 시 해당 백분위 점수의 3% 가산점 부여 ※ 단, 수학 가산점으로 인하여 합계 점수가 1,0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	
영어	등급	25%	250점	■ 등급에 따른 환산점수 사용	
탐구	백분위	25%	250점	■ 탐구영역 2개 과목의 백분위 평균 반영	
계		100%	1,000점		

※ 수능최저학력기준: 수능(일반학생전형) 영어 3등급 이내, 한국사 4등급 이내

※ 수능(저소득층학생전형) 및 탈북학생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

※ 제2외국어·한문은 반영하지 않음

※ 영어 영역: 등급에 따른 환산점수 부여

구분	등급	1	2	3	4	5	6	7	8	9
수능(일반학생전형)	환산점수	100	95	90	-					
수능(저소득층학생전형)		100	95	90	85	80	75	70	65	60

※ 한국사 영역: 수능(저소득층학생전형)은 수능 반영점수(1,000점 만점)에서 최대 10점 감점

구분	등급	1	2	3	4	5	6	7	8	9
수능(일반학생전형)	감점	0	0	0	0	-				
수능(저소득층학생전형)		0	0	0	0	-2	-4	-6	-8	-10

3. 정시모집(기타-탈북학생전형) 평가 방법

❖ 선발방법 및 전형요소 반영 비율 및 점수

전형	선발방법	선발비율	전형요소 반영비율		비고
			수능성적	면접평가	
기타(탈북학생전형)	일괄합산	100% (1,000점)	-	100% (1,000점)	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없음